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21호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재정비 촉진특별회계 재원사항을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규정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산업
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ms1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24조제2항제9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선도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재원) (생 략) <u><신 설></u></p>	<p>제13조(재원) ① (현행과 같음)</p> <hr/> <p>② 법 제24조제2항제9호에서 <u>“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u> <u>이란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u> <u>설 설치를 위한 선도사업에 투</u> <u>입된 비용 중 재정비촉진계획의</u> <u>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u> <u>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u></p>

관 계 법 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8.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용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징수

5.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번	의원명	서명	비고
1	채 필승	채필승	
2	박 희 권	박희권	
3	김 경 식	김경식	
4	최 기 현	최기현	
5	장 기 현	장기현	
6	김 동 상	김동상	
7	유 민 조	유민조	
8			
9			
10			
11			
12			
13			
14			
15			